

수수료의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

제1조 (목적)

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8조(수수료)에 근거하여 트러스트자산운용회사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(이하 “수수료”라 한다)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투자자를 차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

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, 법 시행령, 법 시행규칙,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, 관련법규 및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기준을 따른다.

제3조 (수수료의 구분)

이 기준에서 “수수료”라 함은 집합투자기구 및 일임·자문자산에 적용되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서 아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보수 :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는 집합투자재산의 판매,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로서 그 종류는 아래 각호와 같다.
 -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 :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자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으로서 운용보수와 성과보수로 구분할 수 있으며, 운용보수는 해당 기간 동안 받는 일정한 금전을, 성과보수는 법 제86조, 동법 시행령 제88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-65조 등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받는 추가적인 금전을 말한다.
 - 나. 판매회사보수 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.
 - 다. 신탁업자보수 :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자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.
 -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: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등을 제공한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.
2. 수수료 : 투자자가 부담하는 집합투자재산의 판매,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수수료로서 그 종류는 아래 각호와 같다.
 - 가. 판매수수료 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집합투자증권 판매의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으로서 수수료 지불시점에 따라 선취수수료와 후취수수료로 구분한

다.

나. 환매수수료 : 투자자가 집합투자규약에 정한 기간 이전에 집합투자기구를 환매할 경우 부과하는 수수료로서 간접투자기구의 운용 안정성과 환매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간접투자기구에 편입된다.

다. 투자자문수수료 및 투자일임수수료 : 투자자가 투자자문계약서 및 투자일임계약서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회사에 지급하는 금전으로서 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투자일임계약서에 따라 성과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.

제4조 (수수료의 부과기준)

- ① 회사는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새로운 종류형 상품의 보수 및 수수료는 기존의 다른 종류형 상품의 비용과 수익의 기준 또는 새로운 종류형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.

제5조 (수수료의 부과절차)

- ① 회사의 마케팅팀장은 해당부서의 신상품에 대한 수수료 부과에 대해 해당 운용본부장 및 운용지원본부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심의하며,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거친 후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마케팅팀장 및 준법감시인은 관련 법규에서 수수료에 대해 정하는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③ 회사는 집합투자규약상의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,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거래 상대방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.
- ④ 투자자문수수료 및 투자일임수수료의 경우에도 관련 법규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투자자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투자자문계약서 및 투자일임계약서에 수수료 계산방법(투자일임의 경우 성과수수료 계산방법 포함), 수수료 계산기간 및 수수료 지급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.

제6조 (설명의무)

회사는 법 제 4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

제7조 (투자광고)

회사는 투자광고(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를 제외한다)를 하는 경우 법 제57조제2항 및

법 시행령 제60조제1항3호에 따라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.

제8조 (수수료의 인상)

회사는 이 기준에 따라 결정된 수수료의 인상을 위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0조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제9조 (공시 및 통보)

- ① 회사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이 기준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- ② 회사는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이 기준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금융투자업자별로 비교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한다.

제10조 (제정 및 개정)

이 기준은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제정 및 개정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기준은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

이 기준에도 불구하고,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이 기준 시행전에 결정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이 기준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본다.